교원인사 규정

제 **1**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양사이버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임용, 평가, 포상, 신분보장, 징계, 급여, 복무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7.31>

제 2 조 (적용범위)

- ① 교원인사에 관하여 법령,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- ② 비정년트랙교원은 직무에 따라 교육, 연구, 산학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,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평가 및 인사지침에 의한다.<개정 2012.2.10, 2016.12.20, 2018.07.30, 2019.03.19.>
- ③ 이 규정 제3조 이하는 본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. <신설 2019.07.31>
- ④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19.07.31>
- ⑤ 비전임교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19.07.31>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"임용"이라 함은 신규채용·승진·승급·재임용·재계약·정년보장·전보·겸임·파견·휴직·직위 해제·정직·복직·면직·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

제 4 조 (교원의 직급)

- ①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, 부교수 및 교수로 한다. <개정 2012.2.10.>
- ②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의 직급을 부여하지 않는다. <신설 2018.07.30>

제 5 조 (겸직금지)

교원은 타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
제 6 조 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

- ① 교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.
- 1. 타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
- 2.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
- 3. 실험실 창업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
- 4. 상업·공업·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(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)
- ②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1. 허가의 필요성

- 2.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
- 3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겸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.

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

제 7 조 (인사위원회의 설치)

-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·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교수업적평가위원회

제 8 조 (교수업적평가위원회)

- ①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위원회(이하 "업적평가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2.2.10>
- ② 업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부총장이 위촉하는 5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조교수급 이상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 <개정 2009.12.29>
- ③ 업적평가위원회는 연도별 교원 업적평가와 승진·승급·재임용·재계약·정년보장 심사 평정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4 장 임 용

제 9 조 (임용의 원칙)

- ① 교원의 임용은 연구 및 교육·학생지도·봉사실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.
- ②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.

제 10 조 (임용의 제한)

-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·승급·재임용·재계약·정년보장임용을 할 수 없다.
- 1.징계처분·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<개정 2020.03.01>
- 2.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
정직……18월

감봉·····12월

견책 · · · · 6월

② 퇴직교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할 수 없다. 다만, 대학교육 기관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 전의 당해 직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임용심사절차)

교원 승진·승급·재임용·재계약·정년보장의 심사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 12 조 (임용권자)

교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.

제 13 조 (임용일)

- ① 임용은 매년 **3**월 **1**일과 **9**월 **1**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 <개정 **2020.03.01>**
-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3.01>

제 *14* 조 *(*임용기간)

- ① 신규로 채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단, 임용일이 3월 1일과 9월 1일이 아닌 경우 임용기간은 개별계약을 통해 4년 이내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임용 첫 학기에 학기 기간의 1/2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해당학기 전체 기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한다. <개정 2018.11.28, 2019.03.19, 2019.08.30>
- ②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단, 임용일이 3월 1일과 9월 1일이 아닌 경우 임용기간은 개별계약을 통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임용 첫 학기에 학기 기간의 1/2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해당학기 전체기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한다. <개정 2013.12.24, 2016.12.20, 2018.07.30, 2019.03.19, 2019.08.30>
- ③ 정년트랙 교원의 직급별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로 한다. 다만,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정년 트랙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, 당해직급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당해 직급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>
 - 1. 조교수 7년 <개정 2019.03.19>
 - 2. 부교수 5년
 - 3. 교수 정년까지 임용
- ④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제3항의 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처음 도래한 재임용 기준일로부터 2년간 임용한 다.
- ⑤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제3항의 직급별 임용기간에 2년을 가산하여 임용한다. 다만,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예체능계 실기 또는 건축디자인·도시설계분야의 정년트랙 교원

- 에 대하여는 제3항의 직급별 임용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임용한다.
- ⑥ 임용기간 중에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재임용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2.2.10>

제 15 조 (임용기간계산)

-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, 재임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.
-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.
-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. 다만,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정관 제44조제2호·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6 조 (임용일자 소급의 금지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하여 추서하는 경우
- 2. 이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 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

제 17 조 (교원의 자격)

교원은 [별표 1]호에서 정하는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을 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.

제 18 조 (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교원에 신규임용 될 수 없다.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재직중인 교원이 제1항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- ③「교육공무원법」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교 교원에 신규채용 될 수 없다. <신설 2019.07.31>

제 19 조 (신규채용)

- ①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 전형에 의한다.
- ②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1. 기초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
- 2. 전공심사 :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
- 3. 면접심사 :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
- ③ 제2항제1·2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원신규채용심의회를 둔다.
- ④ 심의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내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외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.

제 20 조 (특별채용)

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전형(이하 "특별채용"이라한다)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있다.

제 21 조 (세부사항)

신규채용과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.

제 22 조 (임용계약)

- ① 신규로 채용되는 교원(이하 "계약제 교원"이라 한다)에게는 다음 각 호를 계약조건으로 정하여 임용한다.
- 1. 계약기간(교수·부교수·조교수 계약기간): 3년 <개정 2012.2.10, 2020.03.01>
- 2. 급여 : 교직원 급여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의 연봉
- 3. 근무조건 : 책임강의시간은 연간 18시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이 중 학부 정규학기 전공과 4과 목 이상을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>
 - 4. 업적 및 성과약정 : 연구·교육·봉사 영역의 업적 및 성과 약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 - 5. 재계약 요건 및 절차 : 제 30조에 의한다.
 - 6.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23 조 (경력산정)

- ①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은 이를 통산하되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② 동일한 기간중 두 기관 이상에서의 연구 및 교육경력은 한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한다.
- ③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 환산율 산출기준은 따로 정하며, 그 적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24 조 (직급 및 호봉)

교원의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은 [별표 1]호에 따른다.

제 *25* 조 *(*승진*)*

- ① 승진은 제24조의 각 직급 1호봉에 달한 자로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승진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.
- ② 박사학위 소지자의 직급별 승진호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<개정 2012.2.10>
- 1. 조교수 1호봉 → 부교수 5호봉으로 승진
- 2. 부교수 1호봉 → 교수 10호봉으로 승진
- ③ 박사학위 미 소지자중 예·체능계열은 제2항의 직급별 승진호봉에서 각 1호봉을 감하여 승진하고, 그 외의 분야는 각 2호봉을 감하여 승진한다.
- ④ 재임용 심사와 결부되어 진행되는 승진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재임용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중간

재임용 심사는 승진 심사로 갈음한다. <신설 2020.03.01>

제 25 조의 2 (특별승진) <신설 2019.03.19>

- ① 특별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
- 1.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에 따라 해당 부교수 직급 2호봉에 달한지 1년이 경과한 정년트랙 교원으로 서 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
- ② 교원의 특별승진청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
- ③ 교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도 제25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

제 26 조 (승급)

- ① 교수의 승급은 각 호봉에서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승급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.
- ② 부교수·조교수는 각 호봉에서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승급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. <개정 2012.2.10>
- ③ 교원이 동일직급 내에서 연속 2회 이상 승급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그 신분 및 처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<신설 2012.2.10>

제 27 조 (특별승급) <전면개정 2019.03.19>

- ① 특별승급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.
- 1.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에 따라 1년을 가산하면 교수 직급의 7호봉에 달하는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학과내규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
- ② 교원의 특별승급청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③ 직급 및 호봉부여 기준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의해 특별승급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가산한 호봉을 부여한다.
- ④ 교원이 특별승급하는 때에는 제26조 제1항의 승급자격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28 조 (신분 및 처우)

<삭제 2012.2.10>

제 29 조 (재임용)

- ① 제14조의 제1항 내지 제3항, 제5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진한 정년트랙 교원과 제14조 제1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 및 제14조 제2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육중점교수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한다. 다만,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승진되지 않은 정년트랙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한다.<개정 2012.2.10., 2013.12.24, 2016.12.20>
- ② 비정년트랙 교원은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
<개정 2012.2.10, 2013.12.24>

③ 재임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자,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자,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자,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 <신설 2012.2.10>

제 30 조 (재계약)

<삭제 2012.2.10>

제 31 조 (정년보장)

- ①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정년보장심사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행한다.
- ② 교원은 교수로 승진시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한다.

③ 신규임용시에 교수로 임용된 계약제 교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후 정년보장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한다.

제 5 장 교수업적평가

제 32 조 (업적평가 원칙)

- ①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며, 교원의 승진·승급·재임용·재계약·정년보장 심사평정과 우수교원 선정등에 적용한다. 다만, 외국인채용전형으로 임용된 교원은 별도로 정한다.
- ② 업적평가는 매년 1년 동안의 연구, 교육, 학생지도, 봉사실적, 산학영역을 평가하며, 다음 각호에 의한다. <개정 2019.03.19>
- 1. 업적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.
- 2. 업적평가 대상기간의 실적을 증빙서류 미비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에 재평가 받을 경우 발표일 또는 활동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의 실적으로 반영한다.
- ③ 연구년, 해외장기연수, 파견 기간 동안의 교육 및 봉사영역의 실적은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한 학기 동안의 교육, 봉사영역 실적에 2배하여 인정하고,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년도 해당기간의 교육, 봉사영역 실적을 인정한다.
- ④ 휴직중인 교원은 복직할 때까지 업적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동안의 실적을 업적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 33 조 (평가영역)

- ① 평가는 연구영역, 교육영역, 학생지도, 봉사영역, 산학영역의 5개 영역으로 하되 각각 평가영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9.03.19>
- 1. 연구영역은 해당 전공학문의 지성적, 과학적 활동과 연관된 모든 형태의 연구 및 창작 활동을 포함한다.
- 2. 교육영역은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(강의, 실습 등)하고 지도하는 제반 교육활동을 포함한다. 2의 2. 학생지도 영역은 학생지도, 학생상담, 진학 및 취업지도에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.
- 3. 봉사영역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·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.
- ② 각 영역별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, 평가절차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 34 조 (재심)

- ① 피 평가자는 업적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재심 청구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 6 장 표 창

제 35 조 (표창의 구분)

표창은 개인표창과 단체표창으로 구분한다.

제 36 조 (표창의 시기)

표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본 학원 개교기념일에 행한다.

제 37 조 (표창 절차)

표창은 각 대학(원)장, 각 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 또는 총장이 행한다.

제 7 장 신분보장

제 38 조 (휴직)

교원의 휴직사유와 기간, 휴직교원의 신분과 처우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. 단,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정부 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에 휴직 기한은 그 임용기간으로 하며 1회로 한한다.

제 39 조 (직위해제와 해임)

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 40 조 (의사에 반한 휴직·면직등의 금지)

교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의사에 반한 휴직·면직등의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

제 41 조 (정년)

-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
-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 **8** 장 징 계

제 42 조 (징계의결 요구)

이사장은 교원중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게한 후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에 관한 사건이나 관할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를 충분히 조사한 후 요구한다.

제 43 조 (징계 사유)

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동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- 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정관 기타 본교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2.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,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
- 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 44 조 (징계의 종류)

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한다.

제 45 조 (징계의 효력)

-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-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- ③ 견책은 전과(前過)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제 46 조 (징계절차)

교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는 정관 제62조, 제63조, 제63조의2, 제63조의3, 제64조, 제65조, 제6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47 조 (징계사유의 시효)

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제 9 장 급 여

제 48 조 (급여)

교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**10** 장 복 무

제 49 조 (복무)

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**11** 장 인사기록

제 50 조 (인사 기록)

교원 인사담당부서는 교무처 교무팀으로 하며, 교원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작성·유지·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8.28>

제 51 조 (서류 보관)

전조의 인사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.

- 1. 임용에 관한 서류
- 2. 포상에 관한 서류
- 3. 징계에 관한 서류
- 4.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
- 5.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

제 52 조 (인사관리의 전자화)

제 50조의 교원인사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시에 재직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, 승진 및 승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2009학년도 업적평가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

(2) (경과조치) 기존의 교육전담교수는 교육중점교수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. 단, 시행일 이전 신규 임용 또는 재임용된 교육전담교수의 계약조건은 이후 재임용 시 까지 유지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18.08.28)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2018년 12월 1일 신규채용 전임교수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